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5. .
발 의 자	윤종호의원 외 5명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호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윤종호 · 김인배 · 김상조 · 김정곤 · 박교상
정근수 의원(6인)

1. 제안이유

구미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신설 및 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에서부터 분할발주 적극 검토(안 제5조)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준시장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공종이 많음
- 표준시장단가는 최저가 낙찰제로 형성되며 이는 지속적인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져 공사품질 저하를 가져옴
- 국토교통부 예규('17.2.)에 의거 공사금액 100억 이상 적용

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안 제7조)

- 기존 계약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도급 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 「지방계약법」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

라. 타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를 적극 수용한 경우 행정편의와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구미시에 소재한 영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발주 참여 용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이내에서 실적 및 시공능력을 평가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적정여부, 성실설계”를 “적정 여부, 성실설계”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을 “건설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5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부득이”를 “위원장이 부득이”로,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연2회(상·하반기)”를 “연 2회(상반기·하반기)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3항 본문 중 “3일 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이란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신설>	제6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

<신 설>

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8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
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
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
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 적
정 여부, 성실 설계 -----

-----.

② ----- 건설산업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③ 제2항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2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
----- 연 2회(상반기·하반기) 위원장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7일 전--
-. -----
----- 아니한다.

④ -----
----- 1명-----
----- 된다.

⑤ ----- 필요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

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생략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 ④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 ⑦ 생략